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제금융기구 출자 대납에 대한 국회 의결절차 규정〉
■ 김영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186호)

2025. 9.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참고사항	1
IV . 검토의견	3
1. 한국은행의 국제금융기구 출자 대납에 대한 국회 의결절차 규정(안 제2 조 및 제3조)	3
[참고]	1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영진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2. 14.

다. 회 부 일 : 2025. 2.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정부가 국제금융기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출자금을 대납할 수 있음.

그러나 2015년 이후 지난 10년간 한국은행이 정부를 대신해 국제금융기구에 대납한 출자금만 12조 6,984억원으로 대규모의 국제금융기구 출자금이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정부의 판단에 의해 지출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가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대납하도록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조).

III.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 등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81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1. 한국은행의 국제금융기구 출자 대납에 대한 국회 의결절차 규정 (안 제2조 및 제3조)

현 행	개 정 안
○ 출자대상기구와 출자금(§2) - 정부는 국제금융기구에 출자(출연 포함)하는 경우 국회의 의결 필요 * 예외: <u>한국은행이 국제결제은행에 출자하는 경우, 한국은행이 출자금을 대납하는 경우</u> - 정부는 <u>한국은행이 출자금을 대납하도록 하는 경우, 매년 9월 30일까지 국회에 다음 연도 출자 계획 등 보고</u>	○ 출자대상기구와 출자금(§2) - 정부는 국제금융기구에 출자(출연 포함)하는 경우 국회의 의결 필요 * 예외: <u>한국은행이 국제결제은행에 출자하는 경우</u> - <삭 제>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안, 의안번호 제8187호): ①예산총칙에 <u>한국은행이 국제금융기구에 대납하는 출자금 한도액을 규정,</u> ②예산안 첨부서류로 <u>한국은행이 대납하는 출자금의 해당 연도 실적 및 다음 연도계획 제출</u>

개정안은 정부가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국제금융기구에 출자금을 대납하도록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한국은행이 국제금융기구에 출자금을 대납하는 경우 정부가 매년 9월 30일까지 국회에 다음 연도 출자 계획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참고로, 동 개정안은 ①예산안 예산총칙에 한국은행이 국제금융기구

에 대납하는 출자금 한도액을 규정하고, ②예산안 첨부서류로 한국은행이 대납하는 출자금의 해당 연도 실적 및 다음 연도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안, 의안번호 제 81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음.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금을 한국은행 외환보유고를 사용하여 납입토록 한 것은 1971년에 마련된 규정임.

[1971년 한국은행의 정부 출자금 대납 규정 개정내용]

법률 제1987호 1968. 3. 7. 일부개정	법률 제2311호 1971. 11. 16. 일부개정
제2조 (출자금) 정부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미합중국통화표시의 금액 또는 그 상당액을 각 국제금융기구에 출자한다. 1. 국제통화기금 5천만불 2. 국제부흥개발은행 5천3백30만불 3. 국제개발협회 126만불 4. 국제금융공사 13만9천불 5. 아세아개발은행 3,000만불	제2조 (출자금) ①정부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미합중국통화표시의 금액 또는 그 상당액을 각 국제금융기구에 출자한다. 1. 국제통화기금 8천만불 2. 국제부흥개발은행 6천8백20만불 3. 국제개발협회 130만9천40불 4. 국제금융공사 13만9천불 5. 아세아개발은행 3,000만불 ②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전항에 의한 출자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현행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금융기구가입법」)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국제결제은행에 출자하는 경우(법 제2조제2항제1호)’ 또는 ‘한국은행이 정부의 출자금을 대납하는 경우(법 제2호제2항제2호)’, 그 출자금에 대해 국회 의결을 미리 받지 않

아도 됨.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정부의 출자금을 대납할 때, 이를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아도 됨.¹⁾

그리고 이와 같이 한국은행이 정부가 납부하여야 할 출자금을 대납할 경우에는 정부가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연도 출자계획, 해당 연도 출자 실적 및 그 밖의 중요 사항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개정안은 정부가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국제금융기구에 출자금을 대납하도록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여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확정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임.

매년 한국은행이 국제금융기구에 출자하는 금액을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한국은행이 출자한 출자금은 없고, 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정부가 납부하여야 할 출자금을 대납한 출자금은 연평균 약 10억 달러(약 1조 2,456억 원)임²⁾.

1) 「국제금융기구가입법」

제2조(출자대상기구와 출자금) ② 정부는 국제금융기구에 출자(출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한국은행이 출자하는 국제결제은행의 경우

2. 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납입하는 경우

③ 정부는 출자금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재정여건과 출자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 등을 고려하여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납입하게 할 경우에는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 출자 계획

2. 해당 연도 출자 실적

3. 그 밖에 국제금융기구 출자에 관한 중요 사항

2) [참고 1] ‘국제금융기구 출자·출연 현황’ 참조. 참고로, 2025년의 경우 한국은행이 정부가 납부하여야 할 IMF 출자금 7.9조 원 등 약 8.2조원을 대납할 예정임.

[최근 10년간(2015~2024년) 한국은행의 국제금융기구 출자금 내역]

(단위 : 백만 달러, 십억 원)

구분	법 제2조제2항제1호		법 제2조제2항제2호	
	달러기준	원화기준	달러기준	원화기준
2015	-	-	229.7	269.2
2016	-	-	7,561.3	9,137.8
2017	-	-	358.8	384.4
2018	-	-	354.5	396.4
2019	-	-	370.6	429.1
2020	-	-	261.8	284.8
2021	-	-	315.6	374.2
2022	-	-	247.9	314.2
2023	-	-	445.4	574.3
2024	-	-	217.0	291.3
합계	-	-	10,362.6	12,455.7
최근 10년 평균	-	-	1,036.3	1,245.6

자료 :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

출자금과 달리 출연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회의 예산심의권 침해라는 지적을 수용하여 2009년부터 신규 출연하는 신탁기금에 대해서는 예산안에 출연금을 편성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고 있음.³⁾⁴⁾

3) 국제금융기구 출연(ODA) 사업(3134-301)

4) 최근 10년간(2015~2024년) 한국은행의 국제금융기구 출연금 내역은 아래와 같음

(단위 : 백만 달러, 십억 원)

구분	법 제2조제2항제1호		법 제2조제2항제2호	
	달러기준	원화기준	달러기준	원화기준
2015	-	-	39.6	46.4
2016	-	-	38.4	46.4
2017	-	-	23.0	24.7
2018	-	-	22.1	24.7
2019	-	-	21.3	24.7
2020	-	-	29.1	31.7
2021	-	-	-	-
2022	-	-	42.1	53.3
2023	-	-	-	-
2024	-	-	-	-
합계	-	-	215.6	251.9

* 자료 :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

* IMF 소말리아('20)·수단('22) 채무감면의 경우 IMF내 적립된 자원(특별인출권)으로 납입 → 한은-IMF 간 실제 자금이동은 없으나 한은 회계규정상 회계처리가 필요하여 계상

* 양허성기금인 아시아개발기금(ADF)의 경우 '20년까지 한은 외환보유액으로 납입하다 '21년부터 정부 예산으로 납입

「대한민국헌법」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확정권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한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국제금융기구가입법」 규정이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국제금융기구 출자금을 대납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재정운용에 대한 국회의 통제에 공백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음.

또한, 한국은행이 대납하는 출자금은 원칙적으로 예산안에 편성되어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출자금인데, 한국은행이 정부의 출자금을 매년 대납하고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아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를 준수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⁵⁾

개정안은 한국은행이 국회의 의결 없이 국제금융기구에 출자금을 대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동 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안, 의안번호 제8187호)은 예산총칙에 한국은행이 대납하는 출자금의 한도액을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의 예산

5)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의 경우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②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 및 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그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④전대차관을 상환하는 경우 환율 및 금리의 변동,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하여 원리금 상환액이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초과한 범위 안에서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⑥수입대체경비 등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총칙에 명시해 국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운용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재정민주주의를 제고할 수 있음.

다만, 한국은행이 국제금융기구에 출자금을 대납하는 경우 매년 9월 30일까지 국회에 다음 연도 출자 계획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다음 연도 출자 계획 등을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하려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안, 의안번호 제8187호)의 심사경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기획재정부는 국제금융기구 출자는 출자의 부정기성, 장기간·가변적 협상 과정 등을 감안시 사전 국회 승인을 받기 어렵고, 한국은행이 대납하는 출자금의 실적 및 다음 연도 계획을 국회에 별도 보고 중이며, 출연과 달리 출자는 외환보유액 또는 외화자산 취득으로 계상되므로 대외건전성에 큰 영향이 없다는 입장임.

그러나 여타 국제기구 분담금 역시 금액을 확정하기까지 국제기구와 협상을 거치는 등 사전절차를 거쳐야 하나 예산안에 편성되어 국회의 심의를 받고 있고, 출자금의 실적 및 다음 연도 계획을 국회에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한국은행의 출자금 대납 현황 등의 투명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개정안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출자대상기구와 출자금) ① (생략)	제2조(출자대상기구와 출자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부는 국제금융기구에 출자(출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하거나 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려는----- ----- ---한국은행이 출자하는 국제결제은행의-----.
1. 한국은행이 출자하는 국제결제은행의 경우	<삭 제>
2. 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납입하는 경우	<삭 제>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납입하게 할 경우에는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1. 다음 연도 출자 계획	
2. 해당 연도 출자 실적	
3. 그 밖에 국제금융기구 출자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3조(출자방법) ① ~ ④ (생략)	제3조(출자방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출자금을 납입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증권에 관하여는 제3항을	⑤ 제2조제3항----- ----- -----.

현행	개정안
준용한다.	

문의처
02)6788-5155

참고 1

국제금융기구 출자·출연 현황 (자료 :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단위: 십억 원)

	'17	'18	'19	'20	'21	'22	'23	'24	누계	'25 ^{e)}
합 계	498.6	503.1	551.8	367.7	591.5	469.6	733.6	636.4	04352.3	8428.4

출자 소계	384.4	396.4	429.1	284.8	374.2	314.2	574.3	291.3	3,048.7	8,167.0
AfDB	2.3	2.4	0.1	0.1	5.0	5.3	5.1	5.4	25.7	5.3
AfDF	36.0	35.5	35.6	38.7	39.6	40.0	47.1	46.6	319.2	46.6
AIIB	160.2	167.2	173.1	-	-	-	-	-	500.6	-
CABEI	-	-	-	36.7	73.4	7.1	43.5	7.8	168.6	7.8
EBRD	-	-	-	-	-	-	-	-	-	11.9
IBRD	-	-	27.7	26.0	28.4	30.3	30.9	-	143.4	-
IDA	152.8	164.2	164.5	166.8	190.3	191.9	387.7	211.5	1,629.8	211.7
IFC	-	-	-	-	31.6	33.7	34.3	19.9	119.6	19.9
IIC	33.1	27.1	28.0	16.4	6.0	5.9	-	-	116.4	-
IMF	-	-	-	-	-	-	25.6	-	25.6	7,863.7

출연 소계	114.2	106.7	122.7	82.9	217.3	155.4	159.3	345.1	1303.6	261.4
WB	56.7	62.3	63.7	48.7	100.7	68.0	63.2	144.9	608.1	141.2
ADB	42.0	41.6	44.5	33.9	54.8	43.1	43.5	49.4	0 352.8	0 61.2
AfDB	10.4	10.2	13.2	-	17.0	10.2	5.9	15.6	82.4	16.5
EBRD	4.6	4.5	4.4	4.8	4.0	3.9	7.0	71.2	104.4	8.7
IDB	10.4	9.4	16.1	3.6	24.1	13.9	10.5	15.7	103.6	11.0
IMF	3.5	3.4	5.5	11.8	4.8	57.8	17.3	36.4	0 140.4	0 22.8
AIIB	11.5	-	-	-	-	-	-	-	11.5	-
CABEI	-	-	-	11.9	11.9	11.9	11.9	11.9	59.5	-

* 2024년 달러기준 납입금액에 12.31일납입예정 (CABEI 출자, US\$ 5,625,000) 건도 포함되어 있음

* 예산기준, 각 연도별 편성환율 적용

참고 2

주요 국제금융기구 현황 (자료 : 기획재정부)

기구명	기구 개요			우리나라 관계		
	설립 연도	가맹 국수	설립목적 · 활동	가입 연도	아국 지분	관련성
IMF	1945.12	191	국제환거래 안정 및 국제수지 조정 지원	1955.8.	1.80%	융자수혜 195억 불 상환 완료
IBRD	1945.12	189	개도국 경제개발을 위한 장기개발자금 지원	1955.8	1.68%	융자수혜 154.7억 불 상환 완료
IDA	1960.9	174	저소득개도국에 대한 양허성 · 장기융자 공여	1961.5.	1.10%	'78년 IDA-5부터 수혜국 →공여국전환, '24.12월 IDA-21 최종회의 한국개최
IFC	1956.7	186	민간기업에 대한 투·융자	1964.3	1.32%	IFC 한국사무소 개소 이후 최근 8년간 19개 사업, 13.2억불 투자
MIGA	1988.4	182	대개도국 민간직접투자에 대한 보증	1988.7	0.45%	MIGA 한국사무소 개소 이후 최근 8년간 7개 사업, 2.94억불 지원
ADB	1966.8	69	아시아 개도국 경제개발 지원	1966.8 (창립 회원국)	5.03%	'23년 제56차 ADB 연차총회 개최(인천) e-Asia 지식협력기금 출연
EBRD	1991.3	75	중동부 유럽 정치 · 경제체제 전환국에 대한 개발금융지원	1991.3 (창립 회원국)	1.01%	기술협력기금 출연
AfDB	1964.9	81	아프리카 경제개발 및 사회 발전에 기여	1982.12	0.47%	KOAFEC 장관급회의 개최 등 아프리카 진출기회 확대 지원
IDB	1959.12	48	중남미경제사회통합	2005.3	0.004%	한-중남미 비즈니스포럼 개최 등 한-중남미 간 기업교류 플랫폼 제공
AIIB	2016.1	110	인프라 투자를 통한 아시아 경제사회 발전 및 지역간 협력증진	2016.1 (창립 회원국)	3.85%	지분율 5위, 영구이사국으로서 제 2차 연차총회 개최('17.5월, 제주)
CABEI	1960.12	15	중미 8개국 연합기구(SICA) 재정지원 및 핵심가치 공유	2020.1	9.0%	지분율 7위, 단독신탁기금 1개 운영